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대통령령으로 위임 등 〉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025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대통령령 으로 위임	3
2.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등에게 피고용인 등의 본인 여부확인 명시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2.
3. 회 부 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이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피고용인이나 출입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나이만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에 더해,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업소의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등의 대상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이를 준수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의 대상자 나이·본인 확인 방법

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의 대상자 나이·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29조).

Ⅲ. 검토의견

1.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생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u>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④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⑤ ~ ⑩ (생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8조제4항¹⁾은 청소년유해약물등을²⁾ 판매·대여·배포하고자

- 1)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유해약물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16조3)는 음란성·폭력성이 높은 영화·비디오·게임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 보호법」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판매 금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과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과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대통령령⁵⁾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6)에 따
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7)에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 시사· 산업· 과학· 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기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5)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6)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 등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6조와 같이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배포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으로, 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청소년 유해약물 등은 대면, 온라인, 무인 판매업소, 통신판매(주류)⁹⁾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고, 「담배사업법」, 「주류면허법」 등 별도의 법령이 있으므로 나이 및 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9)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인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2.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등에게 피고용인 등의 본인 여부 확인 명시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의 종업원 고용시 확인 사항에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을 명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의 확인 사항에 출입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u>나이</u> 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 ----- ----- ----- ----- <u>나이</u> <u>이</u> 및 본인 여부-----.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u>나이</u> 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u>나이</u> <u>및</u> 본인 여부----- -----.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u>나이</u> 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 ----- ----- ----- <u>나이</u> <u>및</u> 본인 여부----- -----.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④ ----- -----

다른 <u>나이</u>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u>나</u> <u>이</u>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u>나이 및 본인 여부</u>----- ----- -----<u>나</u> <u>이 및 본인 여부</u>----- ----- ----- -----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16조(청소년 유해매체물등의 판매 금지),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에서 나이 확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6조 및 제28조에서는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제29조에서는 나이 확인만을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16조 및 제28조와 같이 제29조에서도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도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16조 및 제28조와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제29조)은 대면 상황에서 나

이를 확인하는데, 피고용인 및 출입자의 나이 확인시 당연히 본인 여부 확인이 전제되며,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의 방법¹⁰⁾으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현행과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의 실익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대면 상황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본인여부 확인 의무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업소의 피고용인이나 출입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현행 법률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나이 확인 규정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

10)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으나 유해매체물을 기준으로 유해약물과 유해업소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적절한 나이 및 본인 확인 수단에 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